



간접 흡연으로 인한 피해... 업무상 재해가 될 것인가



김나의
법산 법률사무소 변호사

흡연이 건강에 해롭다는 것은 익히 잘 알고 있

는 사실이다.

비흡연자들은 흡연자들의 흡연으로 인한 담배연기, 냄새에 상당히 불쾌감을 가진다.

흡연자들은 길을 걸으면 흡연자의 주위나 뒤를 따라 걷는 사람들이 그 연기에 상당히 고통스러워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을까...

담배가 기호식품이 되지만 그렇다고 타인에게 피해를 주는 것까지 용인될 수는 없다.

그래서 음식점, 공공장소 등에는 금연구역과 흡연실이 따로 마련되어 있다.

흡연자로부터 지속적으로 피해를 입는 비흡연자들은 흡연 환경으로부터 벗어나고 싶을 것이며, 비단 건강상에 문제가 생겼을 때 간접흡연으로 인한 피해라고 여겨 손해배상이라도 청구하고 싶을 심정일 것이다.

최근 담배를 피지 않는 근로자가 사무실에서의 간접흡연으로 인해 만성폐질환에 걸렸다며 법원에 업무상재해로 인정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한 바가 있다. 이에 대해 법원은 흡연이 만성폐쇄성폐질환의 중요 원인인자이지만 그 이외에도

유전적 요인, 직업성 분진, 화학물질, 대기오염, 실내오염, 낮은 사회 경제적 수준, 만성기판지염, 호흡기 감염 등 다양한 위험인자가 있으며 간접흡연은 그 위험성을 증가시키기는 하나 30%에 불과하다고 하였다.

그리고 회사에 근무하면서 얼마나 심각한 간접흡연에 자주, 지속적으로 노출되었는지 알 수 없어 폐질환의 발생 내지 악화에 얼마나 기여했는지 알 수 없다며 업무상 재해를 인정하지 않고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결국 간접흡연이 만성폐쇄성폐질환 발병에 기여한 정도, 간접흡연으로 인해 만성폐쇄성질환이 생겼는지 그 인과관계가 입증되지 않아 위와 같은 판결이 내려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위 판결에서 간접흡연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지 않았다는 측면에만 중점을 둘 것이 아니라 간접흡연으로 인해 비흡연자들이 겪는 피해를 되새기고 간접흡연 역시 30% 정도라도 질병을 유발시킨다는 점에 착안하여 흡연자들이 비흡연자들을 배려할 수 있는 태도를 견지하는 것이 요구된다.